의안번호		제 566 호				
의	결	년 월 일				
연 월	일 일	(제 회)				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566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기관 명칭을 "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"에서 "재단법인 충북 과학기술혁신원"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변경
- 사업 범위 확장 및 구체화,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·표현정리

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제명을 「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지역 산업육성,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사업범위 확장 및 구체화(안 제4조)
- 기본재산 조성에 차입금과 수익금 추가(안 제5조)
-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는 근거 마련(안 제8조)
-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·표현 정리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홍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지식산업"이란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2. "소프트웨어산업"이란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3. "정보통신산업"이란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4. "방송통신산업"이란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.

- 5. "문화산업"이란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6. "관광사업"이란「관광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- 7. "콘텐츠산업"이란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8. "중소기업"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- 9. "첨단중소기업"이란 제8호의 중소기업 중「산업발전법」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10. "벤처기업"이란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기업을 말한다.
- 11. "지식재산권"이란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.
- 제3조(법인격 및 명칭)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,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(이하 "과기원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4조(사업) ① 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
 - 2. 국가과학기술혁신 지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연구 단지 조성 및 운영
 - 3.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
 - 4. 지역 과학기술연구개발 기획·조사·성과분석·평가 등 정책연구

- 5. 전(全)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
- 6. 첨단산업 기술진흥, 산업·기술 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
- 7. 지식·소프트웨어·정보통신·방송통신·문화·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·진흥사업
- 8. 국가, 도, 시·군 또는 관련 기관·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,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·진흥사업
- 9. 그 밖에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충청북도와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
 - 2.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
 - 3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와 기업체, 대학, 후원인 등의 출연금
 - 4.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
- 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- 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과기원의 사업과 유사하 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하여 수행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업무위탁으로 발생하는 소요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 - ③ 제2항의 소요경비에는 사업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기원이 보유한 유· 무형의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기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경영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, 회계,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와 과기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제9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재단법인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과기원으로 본다.

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 진흥원의 행위나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과기원의 행위나 과기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별표의 공보관 위탁 대상기관란 중 "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"을 "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"으로 한다.
 - ②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4조제2항제4호바목 중 "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"을 "(재)충북과학기술 혁신원"으로 한다.
 - ③「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8조 중 "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"을 "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"으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설립 목적
- 2. 주요 업무와 사업
-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-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- 제26조(검사·보고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.
- 1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방공무원법

- 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 직공무원,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,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- 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

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・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 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- 제4조(설립허가)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 - 1.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
 - 2.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 - 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
 -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,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-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충청북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육성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기관 명칭을 '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'에서 '재단법인 충북과학 기술혁신원'으로 변경
- 사업 범위 확장 및 구체화,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·표현정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·안내판·표지판 등 교체, 기관 CI 개발, 홈페이지 정비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필요
- 3. 관련조문 : 해당없음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·안내판·표지판 등 교체, 기관 CI 개발, 홈 페이지 정비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

나. 추계 결과

○ 각종 간판 등 교체 : 28,280천원

○ 홈페이지 재정비 : 50,000천원

○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: 45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출연금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신성장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김 상 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계		123,280	-	-	-	-	123,280
본관 캐노피 간판		11,760	-	-	-	-	11,760
본관 기관 현판		1,000	-	-	-	_	1,000
건물외벽현판설치		5,520	_	-	-	_	5,520
본관,별관호실표찰		6,200	_	-	-	-	6,200
기타 시트지교체		3,800					3,800
홈페이지 재정비		50,000	_	-	-	_	50,000
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		45,000	_	-	-	-	45,000
재원 조달							
자체	소 계	123,280	_	-	_	_	123,280
수입	도비(출연금)	123,280	_	-	_	_	123,280